

第120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1號(附錄)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 1. 2002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産 管理計劃 變更計劃(案) 1面
- 2. 서울特別市都市計劃條例改正建議要求(案) 4面

1.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863
----------	-----

제출년월일 : 2002. 4.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사직공원 부지내 구민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일환으로 부지를 구에서 매입하여 문화체육센터를 건립
- 구 혜화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우리구 숙원사업인 다목적 구립운동장 건립

3. 관리계획(안) : 별첨

4.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제77조, 동법시행령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서울특별시종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5. 예산조치

- 종로문화체육센터 부지 : 확보완료
- 혜화초등학교 이전부지 :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요청 예정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2002년도 총괄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 득	계	토지	2	3,826	375,370	5	14,710.50	10,134,187	7	18,536.50	10,509,557	
		건물				1	6,138.28	239,250	1	6,138.28	239,250	
		기타										
	1. 매 입	토지	2	3,826	375,370	5	14,710.50	10,134,187	7	18,536.50	10,509,557	
		건물				1	6,138.28	239,250	1	6,138.28	239,25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2. 교환으로 취득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3. 기타취득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소유 자주소·성명
	지목	소재지	수량				
계				10,748,807			
1	임야 임야	사직동 산1-48 사직동 산1-56	3,207.00 619.00	317,494 57,876	2002년 5~6월중	- 동 부지에 종로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문화체육공간 확충과 주민생활의 질 향상	국(산림청) 국(국방부)
2	건물 학교용지 임야 임야 임야	명륜1가 1-27 명륜1가 1-27 명륜1가 1-36 명륜1가 1-37 명륜1가 7-68 명륜1가 1-41	6,138.28 14,066.20 154.00 50.10 215.20 225.00	239,250 9,832,274 56,980 18,938 160,970 65,025	2002년 11월중	- 해화초등학교 이전부지를 매입하여 우리구 숙원사업인 구립 다목적운동장 건립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감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건의요구(안)

의안 번호	865
----------	-----

제출년월일 : 2002. 4. 19

제 출 자 : 안재홍의원 외 5인

1. 주 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6조제2항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을 건의함.

다 음

가.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를

나.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연경관지구가 아니고,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로 개정

2. 제안이유

가. 매장으로 인한 국토잠식과 선진사회의 장묘문화 변천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매장등에 관한 법률을 2000년 1월 12일자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매장문화에서 화장 및 납골문화로 시행하여 불필요한 국토의 훼손과 인적·물적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에는 전적인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나. 그러나 주문의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등에 별다른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도시계획 차원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폐율(30%)이나 용적률 등 상당한 사권의 제한을 가하면서까지 제도화하고 있는 경관지구의 지정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자연경관지구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납골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관지구의 지정취지와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개정을 건의함.

3. 참고사항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2절(40조, 41조, 42조)